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에스엘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이사회의 의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그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②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,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이사 중 선임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 및 소집권자)

-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 일 내에 개최한다.
-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위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7 일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제 1 항의 소집통보는 각 이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-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1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
 - (1)-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

(이하 '전자주주총회'라 한다.)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- (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기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(2)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
- (3)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
- (4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- (5)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의 소각
- (6) 자산 재평가 실시
- (7)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
- (8) 배당에 관한 사항
- (9)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- (10) 16 호로 변경
- (11) 건 별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- (12) 건 별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(13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의 5%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(14) 건 별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을 위한 가지급 및 대여
- (15) 건 별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등
- (16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

3. 이사,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
- (2) 이사회 의장의 결정
- (3) 이사의 직위, 직무의 위촉과 해촉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5) 이사의 겸업,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
- (6)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7)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개폐

4. 기타 경영사항

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, 이사가 업무집행상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요구한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이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0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의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록)

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4 조(전문가의 조력)

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부 칙 (2012. 4. 2)

이 규정은 2012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6. 23)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12. 10)

이 규정은 2021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12. 01)

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 3. 26)

이 규정은 2025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 3. 26)

제 1 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5 조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경과조치) 제 9 조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